

사업장 현황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사업 []여 []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① 수입금액(매출액) 명세 (단위: 원)

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합	계	수입금액	수입금액 제외
(1)											
(2)											
(3)											
(4)											
(5)											
	합		계								

② 수입금액(매출액) 구성 명세 (단위: 원)

합	계	계산서발행금액		계산서발행금액 이외 매출		
		계산서 발급분	매입자발행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기타 매출

③ 적격증명(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 수취금액 (단위: 원)

합	계	매입 계산서		매입자발행 계산서	매입 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금액
		계산서 수취분			세금계산서 수취분		
		전자 계산서	전자 계산서 외		전자 세금계산서	전자 세금계산서 외	

④ 폐업 신고

폐업연월일	.	.	폐업사유	
-------	---	---	------	--

첨부서류(해당 내용 표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 전자신고 ☐ 전산매체
☐ 서면 ☐ 해당 없음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전자신고 ☐ 전산매체
☐ 서면 ☐ 해당 없음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 전자신고
☐ 서면 ☐ 해당 없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전자신고 ☐ 전산매체
☐ 서면 ☐ 해당 없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 전자신고
☐ 서면 ☐ 해당 없음

수입금액검토표 ☐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1조에 따라 신고하
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세무대리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	--	---------	--	------	--

※ 공동사업자인 경우만 작성합니다.

⑤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 부표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수입금액 분배내용	
공 동 사 업 자		분배비율(%)	수입금액(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합 계			

첨부서류	1.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2.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3.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4.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5.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6. 수입금액검토표	수수료 없 음
------	---	------------

작 성 방 법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며,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 이 서식은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납세조합가입자는 제외합니다)가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하며,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자 대표자가 수입금액 등의 합계를 신고하고 ⑤의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 부표"에 구성원 수입금액 등을 분배비율에 따라 작성함으로써 구성원은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수입금액(매출액) 명세란: **업태 · 종목별로 구분**하여 수입금액[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부동산 제외) 양도가액 포함]을 적습니다. 수입금액 제외란은 간편장부대상자의 자산 매각 등 **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 수입금액(매출액) 구성 명세란:
 - 합계란은 ①의 "수입금액(매출액) 명세"의 수입금액 합계와 일치한 금액을 적으며, 계산서발행금액과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기타 매출이 **충복된 경우에는 계산서발행금액에만** 적습니다.
 - 수입금액의 구성 명세는 계산서발행금액(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금액 중 사업자 본인의 계산서 발급분과 매입자발행계산서제도에 따라 매입자가 발행한 매입자발행계산서에 대한 매출분을 구분하여 작성)과 계산서발행금액 이외의 신용카드매출액(「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 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를 포함), 현금영수증매출액 및 기타매출액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 계산서발행금액**은 ①의 "수입금액(매출액) 명세"의 "수입금액 제외"를 뺀 수입금액 중에서 계산서발행금액을 적습니다.
- 적격증명(계산서 ·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 수취금액란:
 - 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 관련 매입금액 중 매입 계산서(매입자발행계산서가 있는 경우 계산서 수취분과 매입자발행계산서 금액 구분)와 매입 세금계산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분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금액 구분), 신용카드 등으로 매입한 금액을 구분하여 각각 적으며, 수취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나. "전자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출처가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한 분을 적습니다.
- 폐업신고란: 과세기간 중 폐업자는 폐업연월일과 폐업사유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 부표란:
 - 분배비를 합계란은 100%가 되어야 하며, 수입금액 합계란은 ①의 "수입금액(매출액) 명세"란의 수입금액 합계 및 ②의 "수입금액(매출액) 결재수단별 구성명세"란의 합계와 동일한 금액을 적습니다.